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기계설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기계설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조정제도 시행을 위해 「기계설비법」 제19조제8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조정 시 받아야 하는 등급조정교육을 유지관리교육에 추가하여 등급조정교육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조정 시 받아야 하는 등급조정교육을 유지관리교육에 추가(안 별표6)
- 나.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선임될 때마다 받아야 했던 신규교육을 처음 선임될 때 한번만 받도록 개정(안 별표 6 및 별표 5의2)
- 다. 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에 설비보전·컴퓨터응용가공 산업기사 추가(안 별표 2)
- 라. 등급조정 시 적용하는 실무경력, 보유자격·학력, 교육 점수의 배점을 변경(안 별표5의2)
- 마. 초급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인정범위에 기능사 자격을 가진 6년 이상 유지관리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추가(안 별표5의2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기계설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기계설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제1호가목4)의 기술·기능 분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건축설비·배관·정밀측정·건설기계설비·공조냉동기계·생산자동화
·판금제관·용접·소음진동·에너지관리·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(태양
광)·설비보전·컴퓨터응용가공(다만, 1999. 3. 27. 이전에 일반기계기사
2급 및 기계기사 2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한다)

별표 5의2 나목1)부터 3)까지 외의 부분 중 “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및
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”를 “기계설비유지관리자”로, “특급·고급·중
급·초급으로 조정하여”를 “조정하여”로 하고, 같은 목 1) 중 “30점”을
“35점”으로 하며, 같은 목 2) 중 “30점”을 “45점”으로 하고, 같은 목 3) 중
“40점”을 “20점”으로 하며, 같은 표 라목제2호가목4)자격 및 경력 기준의
보유자격 실무경력란 라)를 마)로 하고, 같은 란에 가목라)를 다음과 같
이 신설한다.

가) 기능장		제1호나목에 따라 초급으로 산정된 기 계설비유지관리자
나) 기사		
다) 산업기사	3년 이상	
라) 기능사	6년 이상	
마) 초급 건설기술인		

별표 5의2 비고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건축설비·배관·건설기계설비·공조냉동기계·용접·에너지관리·설비보전·컴퓨터응용가공(다만, 1999. 3. 27. 이전에 일반기계기사 2급 및 기계기사 2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한다)

별표 6 제1호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등급조정교육	법 제19조제11항에 따른 등급조정을 위해 유지관리교육을 받으려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	
-----------	--	--

별표 6 제3호가목 본문 중 “선임될 때마다 이수해야 한다”를 “처음 선임될 때 이수한다”로 하고, 같은 목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제1호 다목의 등급조정교육을 이수한 유지관리자는 제1호 나목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5082